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감염병예방법상의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검역 전문위원회를 추가하고, 코로나 19 국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추가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상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안 제7조)

- 검역전문위원회 추가,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전문위원회 명칭 변경 및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위원 수 상향

나.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23조의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위기관리대책”을 “위기관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 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5명”을 “25명”으로 한다.

10. 검역 전문위원회

제23조의3제1항 중 “법 제42조제2항 및 제5항”을 “법 제42조 제4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법 제42조제9항”을 각각 “법 제42조제1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 회를 둔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감염병 <u>위기관리대책</u> 전문위 원회	7. ----- <u>위기관리</u> ----- --
8. · 9. (생 략)	8.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0. 검역 전문위원회</u>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u>15명</u>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 ----- <u>25명</u>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의3(감염병환자등의 격리 등을 위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 정) ① <u>법 제42조제2항 및 제5</u> <u>항</u> 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조사 · 진찰을 하거나 격리 · 치 료 등을 하는 감염병관리기관으 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이하 “감염병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감 염병환자등을 위한 1인 병실[전	제23조의3(감염병환자등의 격리 등을 위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 정) ① <u>법 제42조 제4항 및 제7</u> <u>항</u> ----- ----- ----- ----- ----- ----- ----- ----- -----

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을 갖춘 병실을 말한다]을 설치한 감염병관리기관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u>법 제42조제9항</u>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u>법 제39조의2</u>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u>법 제42조제9항</u>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 --. ② ----- ----- <u>법</u> <u>제42조 제11항</u>----- ----- ----- ----- -----. ③ ----- ----- <u>법</u> <u>제42조 제11항</u>-----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506